

중국의 현행 금융규제법제와 문제

I. 서론

II. 중국 금융법제의 발전단계

1. 공백기(1949~1977)
2. 초기발전기(1978~1994)
3. 신속발전기(1995~2002)

III. WTO 가입 후 중국의 현행 금융법제

1. 중국의 금융법제 현황(2002년 전후)
2. 중국의 금융관리감독체계

IV. 중국 금융법제체계의 문제와 전망

1. 현행 중국 금융법제체계의 문제점
2. 중국 금융규제의 문제와 전망

V. 결론

I. 서론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2009년 한국 총수출 중 중국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3.9%로,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 22.1%에 비해 1.8% 상승하였다.¹⁾ 따라서 중국 금융부문 출구전략 시행의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유 예 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원위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중국의 금융을 규제하는 법제의 분석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은 G20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국제금융 통화시스템의 개혁, 보호주의 반대, 개도국발전의 지원, 세계경제균형회복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의 출구전략은 한국의 수출 및 한국 금융시장안정화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으며, 한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다른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³⁾ 중국의 출구전략 정책과 법제에 관한 자료는 우리나라 출구전략과 금융시장안정화 유지정책에 있어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및 법제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먼저 중국 금융법제사(金融法制史)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중국의 금융 부문을 크게 은행, 증권, 보험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법제체계와 규제의 현황 및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국 금융법제의 발전단계

1949년부터 중국의 금융법제사 60년을 보통 금융법제의 공백기(1949~1977), 초기발전기(1978~1994), 신속발전기(1995~2002) 그리고 WTO 가입 후 성숙기(2003 이후) 등 4단계로 구분한다.³⁾ 그러나 본고에서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G20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국제금융체제개혁과 더불어 중국의 금융법제 및 그 문제를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⁴⁾

1. 공백기(1949~1977)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1949)에서 개혁개방(1978) 이전까지는 중국이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체제를 실시하던 기간이다. 이 시기 중국 금융체제의 특징은 고도 집중, 엄격관리와 대외폐쇄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체제 하에서 중국은 금융활동의 규범과 관리에 대해 행정을 주요수단으로 하였으므로 중국의 금융법제는 공백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1) 삼성경제연구소, “중국의 출구전략과 시사점”, CEO Information, 2010.3.10(제746호).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20에 임하는 중국의 입장과 전략”, World Economy Update, 2010.3.16.

3) 李艳胡, “中国金融法制建设60年回顾与展望”, Financial Management and Research, 2010, p. 33.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현행 중국금융법제에 관해서는 본고 제 III장에서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2. 초기발전기(1978~1994)

1978년 제11기 3중 전회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국가 중대 전략으로 삼고, 경제관리 체제와 경제관리 방법을 개혁할 것을 명확히 제안하였다. 이때부터 중국의 금융체제개혁은 시작되었고, 「은행관리잠행조례(銀行管理暫行條例)」, 「현금관리잠행조례(現金管理暫行條例)」, 「저축관리조례(儲蓄管理條例)」, 「외환관리잠행조례(外匯管理暫行條例)」와 「은행관리조례(銀行管理條例)」 등 일부 금융법규와 규장이 속속 제정되기 시작하였다.⁵⁾

3. 신속발전기(1995~2002)

1995년은 중국 금융법제사에 있어 의미 있는 해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중국인민은행법(中國人民銀行法)」, 「상업은행법(商業銀行法)」, 「담보법(擔保法)」, 「표거법(票據法, 어음수표법)」, 「보험법(保險法)」과 「전인대상무위원회의 금융질서파괴범죄에 관한 결정(全國人大常委會關於懲治破壞金融秩序犯罪的決定)」을 공포하였다. 이상 5개 법률과 1개 결정이 공포된 후 1997년에는 「형법(刑法)」에서 금융범죄만을 규정한 절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증권법(證券法)」을 비롯하여 기타 대량의 금융법규 및 규장을 제정하여 중국 금융법률규범체계의 프레임(frame)을 형성하였다.

III. WTO 가입 후 중국의 현행 금융법제

1. 중국의 금융법제 현황(2002년 전후)

WTO 가입을 전후하여 중국의 금융법제는 제정 및 개정 등 대폭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2003년 12월 27일 전인대상무위원회는 「중국인민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을 개정하였고, 「은행업감독관리법(銀行業監督管理法)」을 공포하였다.

5) 중국법체계는 법률과 행정법규를 토대로 하여 각 지역의 지방성법규(성·자치구·직할시·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가 있으며, 그 하부에 우리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 각 부문의 부문규장(部門規章)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지방정부규장(地方政府規章)이 있으며 그 하부의 지방인민정부도 현지의 실정에 맞는 규칙을 만들게 된다. 그 외 민족자치지방의 법규인 자치조례(自治條例)와 단행조례(單行條例)가 있으며, 경제특별구에도 별도의 법규가 있는데, 각 성(省) 단위에서 제정하는 지방성법규와 같은 지위에 있다.

〈표-1〉 중국의 주요 금융규제법률(2002~2007)⁶⁾

주요법률	발효일자	주요내용
물권법(物权法)	2007.03.16	본 법은 금융교역안전, 금융자산보호, 금융지원확대와 금융위험감소 등 방면에 중요한 작용을 함. 특히 담보물권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는 금융업무의 발전 및 위험대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돈세탁방지법(反洗钱法)	2006.11.10	본 법 제32조는 금융기구가 고객의 신분식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돈 세탁 결과를 초래할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가하며 직접책임이 있는 이사, 고급관리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직원은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사항이 특히 엄중한 경우 돈세탁행정담당부서는 관련 금융감독관리기관에 영업정지 명령과 영업허기증 취소를 건의할 수 있음. ⁷⁾
형법(개정)	2006.10.19 2009.02.28	6차 개정안: 증권관련 부문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정. 공시제도위반, 증권관련기관 및 임직원의 신의성실위반, 시세조작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7차 개정안: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주식과 채권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상의 국무원에서 인가하는 증권까지 포함시킴으로 규제대상의 범위 확대
증권법(개정)	2006.01.01	개정 「증권법」은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증권종류, 발행방법, 상장절차, 거래방법, 정보공시, 증권관련기관의 역할, 증권 산업에 대한 감독관리 등 기타 시장행위의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규정
회사법(개정)	2006.01.01	자본시장을 규제함에 있어 「회사법」은 「증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짐. 2006년 개정에서 주주, 채권자에 대한 권익보호, 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증권거래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필수적인 부분을 보완
외국중앙은행재산사법강제조치면제법(外国中央银行财产司法强制措施豁免法)	2005.10.25	본 법은 중국이 외국중앙은행재산에 대하여 재산보전과 집행의 사법강제조치 면제를 규정함. 단, 외국중앙은행 혹은 그 소속국가정부가 서면으로 면제를 포기하거나 재산보전과 집행에 사용하는 재산을 지정한 경우는 제외
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	2004.04.26	제53조는 국가는 수출신용대출, 수출신용보험, 수출세금환급과 기타 대외무역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대외무역을 촉진한다고 규정. ⁸⁾ 특히 수출신용보험은 화물, 기술과 서비스수출에 대하여 대외무역을 발전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함.
은행업관리감독법	2003.12.27	본 법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지위와 기능을 입법하였고 은행업 금융기구의 설립, 변경, 종지와 업무범위는 모두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심사비준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은행업금융기구 시장진입과 경영활동의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 강화
상업은행법(개정)	2003.12.27	개정 「상업은행법」은 상업은행경영원칙에 대하여 '효익성, 안전성, 유동성' 중심에서 '안전성, 유동성, 효익성' 으로 그 우선순위를 조정.
중국인민은행법(개정)	2003.12.27	본 법의 개정을 통하여 중앙은행 기능의 집중성과 독립성을 강조. 즉, 중국인민은행의 은행업금융기구 관리감독업무를 분리해 내어 중앙은행의 역할이 화폐정책제정과 집행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인민은행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법률지위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함.

6) 중국인민은행 <http://www.pbc.gov.cn/jinrongfaguizhengce/jinrongfagui.asp>과 Richard Herd, Charles Pigott and Sam Hill, "China's Financial Sector Reform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747", www.oecd.org/eco/workingpapers, 2010.2.1.

7) 金融机构存在未按照规定履行客户身份识别义务等行为致使洗钱后果发生的, 将处50万元以上500万元以下罚款, 并对直接负责的董事, 高级管理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 情节特别严重的, 反洗钱行政主管部门可以建议有关金融监管机构责令停业整顿或吊销经营许可证.

8) 第五十三条 国家通过进出口信贷, 出口信用保险, 出口退税及其他促进对外贸易的方式, 发展对外贸易.

주요법률	발효일자	주요내용
증권투자기금법 (证券投资基金法)	2003.10.28	운용회사의 설립, 책임, 임직원의 자격 및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수탁 회사의 자격, 의무, 간접감독에 대한 규제, 펀드모집의 조건, 약관내용, 투자설명에 대한 규제, 펀드 청약과 환매에 대한 규제, 운용과정에서의 정보공시에 대한 규제, 펀드계약의 해지, 변경과 청산에 대한 규제,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보호에 대한 규제, 법적책임 및 부칙을 규정
행정허가법 (行政许可法)	2003.08.27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이 법에 근거하여 금융기구에 대해 사전 관리 감독을 실행하는 일종의 주요수단으로 은행시장진입관리감독, 업무범위관리감독, 위험관리 등 금융시장 규범에 대해 중요한 작용을 함.
신탁법(信托法)	2001.10.01	본 법은 「증권법」과 관련 회사의 매수규정과 관련한 일종의 반(反)매수 수단을 규정. 증권관리감독기구는 「신탁법」과 「증권법」을 조화하여 신탁법률을 운용하여 증권시장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함.

「중국인민은행법」, 「상업은행법」과 「은행업감독관리법」은 중국의 금융감독관 리체제를 대폭 조정하였고 그 주요 내용과 의의는 다음 세 방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중국인민은행법」 개정을 통하여 중앙은행 기능의 집중성과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즉, 중국인민은행의 은행업금융기구의 관리감독업무를 분리해 내어 중앙은행의 역할이 화폐정책 제정과 집행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인민은행의 독립적인 법률지위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은행업금융기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다. 2003년에 제정된 「은행업감독관리법」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의 지위와 기능을 입법하였고, 은행업금융기구의 설립, 변경, 종료와 업무범위는 모두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심사·비준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은행업금융기구 시장 진입과 경영활동의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셋째, 개정된 「상업은행법」의 특징은 상업은행경영원칙에 대하여 원래 ‘효익성, 안전성, 유동성’ 중심에서 ‘안전성, 유동성, 효익성’으로 그 우선순위를 조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상업은행경영원칙의 근본성질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금융안전과 경영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9) 第四檔 商業銀行以效益性, 安全性, 流動性為經營原則, 銀行自主經營, 自捺風險, 自負盈虧, 自我約束.

〈표 2〉 중국의 주요 금융규제법규¹⁰⁾

주요법규	발효일자	주요내용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령 2009년 제 10호(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中国人民银行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令 2009年第10号)	2009.07.21	「반독점법」과 「국무원경영자집중보고표준에관한규정」을 근거로 금융업경영자집중의 보고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 본 판법은 은행업금융기구, 증권회사, 선물회사, 기금관리회사와 보험회사 등 금융업경영자집중영업액신고의 계산에 적용됨.
외환관리조례 (外汇管理条例)	2008.08.07	본 조례는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수지균형 및 국민경제 건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
외자금융기구관리조례실시세칙 (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2002.02.07	「상업은행법」과 「외자금융기구관리조례」를 근거로 세칙제정
WTO 가입 후 중국 금융업대의개방의 내용과 시간 (加入WTO后中国金融业对外开放的内容与时间)	2001.12.01	WTO 관련 협정에 근거하여 외자은행의 외환업무, 인민폐업무, 영업 허가 등 방면의 제한을 점차적으로 취소하고 각 방면의 양허이행에 대해 규정
금융기구취소조례 (金融机构撤销条例)	2001.11.23	금융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질서를 보호하며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2. 중국의 금융관리감독체계

중국은 2003년 금융감독체제 개혁 이후 중국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券监督管理委员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保险监督管理委员会) 등 여러 관리감독기구로 구성된 금융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였다. 중국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금융관리감독기구는 각자 관리 감독하는 영역에서 대량의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였고, 해당 영역 내 금융업무의 지속적인 발전과 강화로 관련 금융 분야의 위험방지에 적극 대처하였다.

10) 중국인민은행 (<http://www.pbc.gov.cn/jinrongfaguizhengce/jinrongfagui.asp>).

1) 중국인민은행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으로 「중국인민은행법」에 근거하여 국무원 영도 하에 통화정책을 제정·집행하고, 금융위기를 해소해야 하며, 금융안전을 유지해야 한다.¹¹⁾

2) 은행

중국의 은행에 관한 법적규제는 「상업은행법」과 「은행업감독관리법」에 근거한다. 2003년에 설립된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경우 「금융허가증관리판법(金融许可证管理办法)」, 「중국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행정허가증실시절차규정(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行政许可实施程序规定)」, 「중국자본상업은행행정허가사항실시판법(中资商业银行行政许可事项实施办法)」, 「외자금융기구행정허가사항실시판법(外资金融机构行政许可事项实施办法)」, 「외자은행관리조례실시세칙(外资银行管理条例实施细则)」, 「촌진은행관리잠행규정(村镇银行管理暂行规定)」 등 금융규장을 포함하여 행정허가제도를 기초로 은행업금융기구의 관리를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혁을 위하여 대량의 구체적인 금융업무경영관리에 관한 규범성문건을 제정하였다. 예컨대, 「상업은행서비스가격관리잠행판법(商业银行服务价格管理暂行办法)」, 「상업은행개인재무업무관리잠행판법(商业银行个人理财业务管理暂行办法)」, 「전자은행업무관리판법(电子银行业务管理办法)」과 「은행대출업무지도(银团贷款业务指引)」 등이 있다.

3) 증권

중국의 증권에 대한 법적 규제는 주로 「증권법」에 근거하며, 1992년에 설립되어 1998년에 승격된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규제에 책임을 진다. 「증권법」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주식, 회사채권 및 국무원이 법에 따라 인정한 기타 증권의 발행과 교역, 정부채권과 증권투자기금의 상장거래, 증권파생상품의 발행과 교역을 규제한다.¹²⁾

11) 第二条 中国人民银行是中华人民共和国的中央银行。中国人民银行在国务院领导下，制定和执行货币政策，防范和化解金融风险，维护金融稳定。

12)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股票、公司债券和国务院依法认定的其他证券的发行和交易，适用本法；本法未规定的，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和其他法律、行政法规的规定。政府债券，证券投资基金份额的上市交易，适用本法；其他法律、行政法规有特别规定的，适用其规定。证券衍生品冲发行，交易的管理办法，由国务院依照本法的原则规定。

4) 보험

1998년에 설립된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법」에 근거하여 중국의 보험 산업에 대한 규제를 책임진다.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처럼 보험회사에 관한 시장 행위 및 신용 규제를 모두 책임진다.

IV. 중국 금융법제체계의 문제와 전망

1. 현행 중국 금융법제체계의 문제점

중국의 금융법제체계는 이미 많이 발전한 상태에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¹³⁾ 첫째, 상위법의 집행성이 강하지 못하며, 하위법의 임의성이 강하다. 중국의 현행 금융법률체계에서 가장 효력이 높은 「중국인민은행법」, 「상업은행법」과 「은행업감독관리법」은 금융관리감독과 금융활동에 대한 원칙성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시행성이 강하지 못하다. 둘째, 중국금융입법은 일부 중요한 영역에서 아직까지 법제의 공백인 경우가 있다. 예컨대, 선물, 국채와 금융파생상품 등 비교적 신흥금융시장영역에서 비록 소량의 관련 규범성문건이 있기는 하나 효력 등급이 낮다. 셋째, 금융개방 요구에 아직까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WTO 가입 후, 중국은 금융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시장진입과 국민대우 원칙에 대해 약속하였다. 외자금융기구의 중국진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경영범위도 인민폐, 채권과 국내결산 등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법제가 중국의 금융개방과 발전에 장애가 된다면 대폭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중국 금융규제의 문제와 전망

중국 금융규제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전통적인 분리 규제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적 추세는 금융 시장을 분리하여 기관을 구체적인 사업 영역으로 한정하는 구조적 제한을 제거하는 것이며, 때로는 이러한 과정을 금융현대화(financial moderniz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¹⁴⁾ 이하 개정된 중국 금융법제는 국제적 추세를 따르려 애쓴 흔적이며, 중국 국내 경제 현황에도 적합한 것이다.

13) 李艳胡, 앞의 책, p. 35.

14) Huihuang, "Institutional Structure of Financial Regulation in China: Lessons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 16 (<http://ssrn.com/abstract=1512015>).

예컨대, 2003년 개정된 「상업은행법」 제43조는 상업은행은 중국 국경 내에서 신탁투자와 증권경영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며, 자기 사용이 아닌 부동산 혹은 은행금융기구와 기업이 아닌 곳에 투자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국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¹⁵⁾ 2005년 개정된 「증권법」 제6조는 증권업과 은행업, 신탁업, 보험업은 분업경영, 분업관리를 실행하고, 증권회사와 은행, 신탁, 보험업무기구를 분별하여 설립한다. 국가의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¹⁶⁾ 2009년 개정된 「보험법」 제8조는 보험업, 은행업, 증권업, 신탁업은 분업경영, 분업관리를 실행하고, 보험회사와 은행, 증권, 신탁업무기구는 분별하여 설립한다. 국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¹⁷⁾ 제106조는 보험회사의 자금운용은 반드시 안정되어야 하고, 안전성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자금운용은 다음의 형식으로 제한된다; (1) 은행저축, (2) 채권, 주식, 증권투자기금 등 유가증권, (3) 부동산투자, (4)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자금운용형식을 말한다. 보험회사자금운용의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보험관리감독기구가 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¹⁸⁾

중국 금융규제문제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세 개의 금융관리감독기관, 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하나의 금융규제기관으로 즉시 전환하자는 것이다.¹⁹⁾ 그러나 이는 중국의 국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즉각적이며 전면적인 전환은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므로, 다른 일부 학자들은 점진적인 경제성장과 보조를 맞추어 단계별 개혁을 제안한다.²⁰⁾

15) 第四十三条 商业银行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不得从事信托投资和证券经营业务,不得向非自用不动产投资或者向非银行金融机构和企业投资,但国家另有规定的除外。

16) 第六条 证券业和银行业、信托业、保险业实行分业经营,分业管理,证券公司与银行,信托、保险业务机构分别设立。国家另有规定的除外。

17) 第八条 保险业和银行业、证券业、信托业实行分业经营,分业管理,保险公司与银行,证券,信托业务机构分别设立。国家另有规定的除外。

18) 第一百零六条 保险公司的资金运用必须稳健,遵循安全性原则。保险公司的资金运用限于下列形式:

- (一) 银行存款,
- (二) 买卖债券、股票、证券投资基金份额等有价证券
- (三) 投资不动产
- (四) 国务院规定的其他资金运用形式。

保险公司资金运用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依照前两款的规定制定。

19) Linyan Xu, "Integrated Financial Regulation: Global Financial Regulatory Reform and China's Choice", the 2008 Annual Conference of China Commercial Law Society, Nachang, China, 2008.10.

20) Huihuang, pp. 25-26.

금융체계의 건강한 발전과 안정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만큼 금융규제체제가 좀 더 효율적인 금융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국은 선진된 금융규제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